

발송번호: 9-5-2021-055520398

발송일자: 2021.07.13.

제출기일: 2021.09.13.

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원인	성명	(주)애틱스바이오 (특허고객번호: 120160181822)
	주소	****
대리인	성명	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이종승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박기덕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박종현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김현지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이예림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김시원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최지원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연슬기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반용선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정은지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이경태
	주소	****
발명자	성명	홍주현
	주소	****
출원번호	호	10-2021-7000289
출원일자	자	2021.01.06.
발명의 명칭	청	신규한 아미노알칸산에 바이페닐기를 도입한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항진균성 약학적 조성물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(2021.09.13.)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[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] 또는/및 보정서[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]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상기 제출기일(2021.09.13.)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을 통해 그 제출기일을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연장신청은 1개월 단위로 해야 하며, 필요 시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월 이상을 일괄하여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.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(하단의 안내참조)으로 4개월을 초과하여 지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.

[심사결과]

☐ 심사 대상 청구항 : 제1-21항

☐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

순번	거절이유가 있는 부분	관련 법조항
1	청구항 제2항, 제6항 내지 제21항	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

☐ 특허 가능한 청구항 : 제1, 3-5항

※ 위 특허 가능한 청구항은 의견제출통지시점에서의 심사의견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출원이 특허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출원에 대해 지적된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어야 합니다.

[구체적인 거절이유]

이 출원은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2항, 제6항 내지 제21항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- 아 래 -

청구항 제2항은 제1항을 인용하면서 화학식 1의 치환기 R1 및 R2의 정의에 ‘시클로프로필, 시클로부틸, 시클로펜틸, 시클로헥실’ 및 R3의 정의에 ‘시클로프로필’인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으나, 인용된 청구항 제1항에는 R1 내지 R3의 정의에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‘시클로알킬’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청구항 제2항은 제1항의 치환기의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, 상기 청구항을 직·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 제6항 내지 제21항도 동일한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※ 상기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제1항의 치환기 R1 내지 R3의 정의에 ‘C₃₋₆ 시클로알킬’을 포함시키거나, 청구항 제2항의 치환기 R1 내지 R3의 정의에서 ‘시클로프로필, 시클로부틸, 시클로펜틸, 시클로헥실’을 제외시키면 됩니다. 끝.

